

# 결 정

2018 - 3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 「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흥기로 찢러」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7. 11. 25. 22:11>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강도 추정(상보)  
최종수정 2017.11.25 19:08 기사입력 2017.11.25 19:08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 씨의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오후 3시18분쯤 삼단봉으로 침입자를 제압해 검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피의자 이 모(44)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카드빚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처음 진술한 금전관계는 지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청부 범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직인 이 남성은 택배 기사로 위장했으며,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보모를 흥기로 위협하며 정 씨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복층에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의 옆구리를 흥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정 씨의 말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흥기에 찔린 남성은 현재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51855387683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딸 관리인을 흥기로 찔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 「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흥기로 찔러」로 목적어를 생략해 정유라가 흥기에 찔린 것처럼 이해된다.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낚시성 제목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